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35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이영실, 강동길, 곽향기,
김 경, 김기덕, 김성준,
김재진, 남궁역, 박강산,
박승진, 박중화, 박춘선,
박철성, 봉양순, 서상열,
서준오, 송도호, 송재혁,
오금란, 유정희, 이민옥,
이상훈, 이소라, 이원형,
임규호, 임종국, 전병주,
최기찬, 최재란, 한 신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한강공원 내 수상시설의 안전한 시민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임.
- 하지만 최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및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를 통해 부상형 시설의 관리 부실 및 검사 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, 조례 개정을 통해 정밀검사 등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.
- 또한 한강공원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보고 사항을 추가하여, 한강공원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원칙에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4조제3호).
- 나.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제3항).

다. 수상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 제3항).

라. 별표 1 근거 조항을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공익에 적합하고”를 “공익성, 시민 안전,”으로, “지속가능한”을 “지속가능하고 안전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수정해야 할”를 “변경해야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수상이용시설(선박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침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하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별표 1 중 “(제3조제3호 관련)”을 “(제12조제1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 중 “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”를 “한강르네상스호,”로, “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”을 “요트마리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본원칙) 한강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한강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<u>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지·관리되어야 한다.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	<p>제4조(기본원칙)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공익성, 시민 안전,</u> ----- ----- <u>지속가능하고 안전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<u>수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변경해야 할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
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수상이용시설(선박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침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하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[별표 1] 공원이용시설(제3조제3호 관련)

구분	공원시설물
1. 수상이용 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, 그 밖의 선박), 선박 계류장, 선착장, <u>요트마리나, 수상콜택시 승강장</u> 나. 여의도 물빛무대 다.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

[별표 1] 공원이용시설(제12조제1항 관련)

구분	공원시설물
1. 수상이용 시설	가. 선박(보트, 요트, 돛단배, 동력보트, 한강르네상스호, 인명구조선, 그 밖의 선박), 선박계류장, 선착장, <u>요트마리나</u> 나. 여의도 물빛무대 다. 서울수상레포츠센터 라.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제3항에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, 제12조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수상이용시설(선박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침수 등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물 하부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